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

2023년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17일 이봉준 의원(찬성 34명)
2.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3월 3일 상정· 의결(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이봉준 의원)

1. 제안이유

○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나. 입법예고 : ‘22. 10. 27.~ ‘22. 10. 31. (결과: 의견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본 제정안은 '마약' 이름의 상품명과 마케팅 등이 남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추진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조례안은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6조(실태조사)
제2조(정의)	제7조(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
제3조(책무)	제8조(사업)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협력체계)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부 칙

2 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관련(안 제1조 및 제2조)

1) 제정안의 내용

○ 안 제1조(목적)는 동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정의)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것임.

2) 검토의견

○ 현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1]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같은 법 제8조제1항[2]에서는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식품등의 명칭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현행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유형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을 표시 또는 광고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3]되어, 위원회 심사

---

1) **「식품표시광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11697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1. 제안이유: 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

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4],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안 제2조(정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5]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겠음.

나. 시장의 책무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관련(안 제3조 및 제5조)

1) 제정안의 내용

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2. 심사진행단계: 제안일(2022. 8. 23.) → 회부일(2022. 8.24.) → 상정일(2022. 11. 7.) → **위원회 심사 진행중**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2. 1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6974)** p7.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9. <생략>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이며, 안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2) 검토의견

○ 현행「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6]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같은 조례 제3조[7] 및 제4조[8]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매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려는 것은「서울특별

---

6)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8)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와도 부합해 보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서울시는「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9]및「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10]를 근거로 현재 “서울시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계획”과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특히 사업내용에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유해약물 인식개선 특화프로그램’, ‘생애주기별 약물교육’,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계획 수립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까지 고려하여 일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임.

---

9)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안 제6조)

1) 제정안의 내용

○ 안 제6조(실태조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2) 검토의견

○ 현행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5조[11]및 제15조의2[12], 제16조[13]에 따라, 시장은 2년마다 “옥외광고물 한글표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14], 향후 “2023년에 추진하는 실태조사에서는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한 옥외광고물 실태도 포함하여 조사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해당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의 ‘마약’ 관련 옥외광고물 사용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1)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5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5조의2(광고물 등의 올바른 한글 표기 권고 등)** ①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3)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중략>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한다.

③ ~ ④ <생략>.

14)서울시 홍보담당관(2022. 10.) **서울시 옥외광고물 한글표기 실태조사 추진현황 보고.**

라. 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등(안 제7조)

1) 제정안의 내용

○ 안 제7조(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등)는 시장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무분별하게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이해관계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2) 검토의견

○ **(‘마약’ 이름의 상품명 현황)** 특허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마약김밥과 2014년 마약방석을 선두로 마약 상품의 특허등록이 시작되었으며,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는 마약 이름의 식품인 ‘마약김밥’이나 생활용품인 ‘마약베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5].

〈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마약’을 주제어로 한 검색 순위 분류

분류	하위 주제어	(상위 10위 이내) 순위	빈도 (20회)
진짜 마약	마약,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1위(2회), 3위, 4위, 5위	5회
마약을 접두어로 한 생활용품	마약베개, 마약매트리스, 바디럽 마약매트리스, 마약배게	2위, 4위, 6위(2회), 7위, 10위	6회
마약을 접두어로 한 식품	마약계란장, 마약토스트, 마약계란, 마약김밥 만들기, 마약계란 만들기, 마약김밥	3위, 7위, 8위(2회), 9위(2회), 10위	7회
기타 (영화명)	마약왕	2위, 5위	2회

15) 김미숙(2021), 상황분석을 통해 본 “마약” 상품명 사용의 사회 · 문화적 함의: “마약베개” 수면용품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57(8), pp31-61.

○ 이처럼 **‘마약’ 이름의 상품이 유행어로 사용되는 독특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약이라는 이름이 흔해지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를 간과하여 중독의 위험에 무비판적,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러한 **마약 용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특허등록을 저지하려는 노력**도 있었음[16].

○ 그러나 2019년도에 있었던 ‘마약베게’ 상표등록과 관련한 재판에서 특허법원은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17]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18],

결국 ‘마약베개’는 2021년 5월 특허로 상표등록되었고 이로써, **마약 상품의 특허등록은 계속될 전망**[19]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안 제7조(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등)에 대하여는 ‘마약’ 상표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입장과 상표를 등록하려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특허법원의 ‘마약베개’ 상표등록출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무분별하게 오

---

16) 김미숙(2021), 상황분석을 통해 본 “마약” 상품명 사용의 사회·문화적 함의: “마약베개” 수면용품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57(8), pp31-61.

17)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 3. <중략>.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 21. <중략>.

② ~ ④ <생략>.

18) 특허법원 2019. 5. 13.자 2019원80 심결 : 사건표시 2019후(원)11961 (2017년 상표출원 제66221호 거절결정불복심판) 환송사건

19) 김미숙(2021), 상황분석을 통해 본 “마약” 상품명 사용의 사회·문화적 함의: “마약베개” 수면용품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57(8), pp31-61.

용·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이해관계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사실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며, **상표권자(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임.

○ 앞서, 전술하였듯이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지난 제400회 국회(정기회)제1차제2법안심사소위(2022. 12. 6.)에서도 “위원들의 의견이 모여지지 않아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를 진행하겠다.[20]”고 밝혔으므로,

본 제정안 제7조(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등)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취지는 공감되나,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소상공인의 의견수렴 필요함

---

20) 회의록 [제400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소위제1차(2022년12월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 **최혜영 위원** 마약 오남용 관련해서 단순히 ‘마약’이라는 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음식 안에 마약이 들었다고 인지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커피’ 이런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소상공인들이 나중에 간판을 이런 것 다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1년 유예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관련한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번쯤 실제로 이 마약 표기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태조사가 먼저 시행이 되고 그런 조사 이후에 그것의 인식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간판이나 바꿔야 되는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강기윤 위원** 그런데 차장님, 이걸 유예기간 1년 주면 영세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법 취지에 잘 따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 가지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물 텐데 그 실효성이 얼마나 담보되겠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이 있습니까?
- **소위원장 강훈식** 회의를 좀 정리할게요. 어쨌든 외원님들 의견이 모이지는 않으니까요 57항부터 59항까지 이상 3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행부가 식약처에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국민 계몽을 할 것인지 그런 방안은 별도로 여기 소위원회 위원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마약’은 주로 김밥과 같은 식품류에 사용되고 있어 상인들의 간판과 메뉴판 교체 부담 및 시민 공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간 필요

○ 이에 조례안의 제3조 ‘책무’ 및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을 시민의 인식,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등’은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어 삭제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에 있음.

-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예와 같이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 금지 규정(’22.8.23.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에서 정하는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 표시·광고 금지(‘22.10.21,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22.12.02,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3 종합의견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마약 이름의 상품이 유행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약이라는 이름이 흔해지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심

각한 폐해를 간과하여 중독의 위험에 무비판적,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본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본 제정안 제7조(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등)는 ① 특허법원의 '마약베게' 상표등록출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며, ② 주요 대상이 식품접객업소 등 소상공인임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주요 대상이 소상공인임을 고려할 때,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소상공인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임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함(안 제3조 및 안제5조제1항).

○ 정책 사업에 대한 시장의 권고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삭제).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248

제안년월일 : 2023년 3월 3일
제 안 자 : 보 건 복 지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주요 대상이 소상공인임을 고려할 때,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소상공인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임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함(안 제3조 및 안제5조제1항).

○ 정책 사업에 대한 시장의 권고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삭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를 각각 안 제7조 및 안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 ---------- ---------- ---------- --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무분별하게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제9조 (생 략)	제7조·제8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